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42호로 2023년 5월 4일 우경란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나. 자동심장 충격기의 정비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사항 신설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5. 1. ~ 5. 6.):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 등)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 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함)을 매년 수립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해당 응급의료지원계획에는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자동심장 충격기의 설치·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을 명시함.
- 안 제7조(장비의 관리)에서는 영등포구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 대해 구청장이 장비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비관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검토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에 근거하여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응급의료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중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일부 내용과 중복되기에 응급의료지원계획의 수립 시 두 계획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2. 2.>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4., 2016. 12. 2., 2021. 12. 21.>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14., 2016. 12. 2., 2021. 12. 21.>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8. 19.>

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